

정책현안자료 2007-07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재산의 소득환산 방안

김 미 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I. 서론	1
II. 재산의 소득환산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I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산의 소득환산제 현황 및 쟁점	9
IV. 기초노령연금의 재산의 소득환산 기본방향	28
V. 기초노령연금의 재산의 소득환산 방안(안)	30

I. 서론

□ 기초노령연금법상의 재산의 소득환산제

-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연금 지급대상)에서는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제2조(정의)의 4호에는 “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재산의 범위,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법 제2조(정의) 4호 단서조항의 취지

- 단서 조항이 법에 포함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주로 다음과 이유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은 제도의 기본이념이 다르다.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구단위를 원칙으로 하지만, 기초노령연금법은 개인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여러 가지 측면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제 모형이 필요하다.
- 이러한 이유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기초노령연금법에 적합한 재산의 소득환산제가 마련되어야 함.

□ 본 자료의 내용

- 제2장: 재산의 소득환산에 대한 이론적 배경
- 제3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재산의 소득환산 현황 및 쟁점
- 제4장: 기초노령연금법에서의 재산의 소득환산 기본방향
- 제5장: 기초노령연금법에서의 재산의 소득환산 방안

II. 재산의 소득환산에 대한 이론적 배경¹⁾

제1절 빈곤의 다차원성

빈곤이란 사회적으로 적절한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resource)의 부족으로 사회적으로 박탈(deprived) 또는 배제(excluded)되는 상태를 말한다. 빈곤의 분석에 있어서 개인 또는 가구들의 다양한 자원들이 분석된다. 소득(income), 소비(consumption), 부(wealth), 근로소득획득능력(earnings capacity), 선택집합(choice sets), 수행능력(capabilities)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자원들을 고려할 때, 빈곤의 측정은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문제이다(Jantti and Danziger, 2000). 이상적으로는 빈곤의 측정을 위하여 이러한 다양한 자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자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 첫째, 다양한 자원들 각각의 측정상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부나 근로소득획득능력 등의 경우 정확한 가치를 계산하기 어렵다. 또한 소비의 경우에도 신뢰성 있는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 둘째, 다양한 자원들 각각이 정확하게 측정되었다 하더라도 다양한 자원들을 동일척도로의 환산(commensurability)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유량(flow)으로서의 소득과 저장(stock)으로서의 부를 동일한 척도로 환산하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는 빈곤은 주로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득(income)의 정도에 의해 측정되어 왔다. 소득은 개인의 자원구매능력을 대표하는 좋은 척도이면서 그 측정이 가장 용이하고 소비에의 취향(tastes)의 차이를 무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빈곤여부 판정의 기준으로 이용되어 왔다(이두호 외, 1991, p.60; 김태성, 손병돈, 2002, p. 34).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빈곤율의 계산은 소득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어떤 가구의 소득과 빈곤선 소득을 비교하여 빈곤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집계하여 한 국가의 빈곤율을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의 빈곤율이 몇%다라고 말할 때 그 빈곤율은 바로 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다.

그런데 소득은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만일 소득의 분포가 다른 다양한 자원들의 분포와 일치된다면 소득은 그 자체로 개인들의 경제적 지위를 반영할 수 있다. 빈곤의 측정에 있어서 소득이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소득이 다른 경제적 자원의 분포와 일치도가 비교적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의 분포가 다른 경제적 자원의 분포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1) 본장의 내용은 홍경준, 이상은, 김미곤 외 『재산의 소득환산제 중장기 추진전략』에서 인용하였음.

예를 들어 미국에서 소득의 분포와 순재산의 분포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Weisbrod and Hansen, 1968).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홍경준 외(2003)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2년도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신규신청자로 구성되는 빈곤층에 대해 수집한 조사자료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소득과 재산간의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가 0.359로서 그 상관관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선진국들의 공적부조제도에서는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소득과 함께 재산기준을 이용하여 왔다. 대부분의 경우 재산기준의 적용방식은 소득의 수준에 무관하게 동일한 재산기준을 부과하는 단순재산기준(simple cutoff)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영국과 벨기에와 같이 공적부조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평가하여 빈곤여부를 판정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절에서는 개인의 빈곤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소득과 함께 재산을 고려하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들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제2절 재산의 소득환산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모델들

개인의 빈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득과 재산의 양자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존재하는 듯하다. 그러나 재산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일련의 이슈가 제기된다. 기본적인 문제는 소득은 유량(flow)인 반면 재산은 저량(stock)이므로 이 두 가지를 동일척도로 환산하여 합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저량인 재산을 유량으로 환산함으로써 소득과 재산을 동일척도위에서 합산하고자 하는 몇 가지의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1. 위기척도(Crisis measure)

David and Fitzgerald(1987)는 어떤 가구의 빈곤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소득과 함께 재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기정의(crisis definition)을 제안하였다. 이 위기정의에 따르면 일시적인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경우 유량(flow)으로서의 정규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저량(stock)로서의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은 재산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과 함께 합산되는 재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빈곤의 측정시에 주택 등의 필수적인 재산을 제외하고 은행저축예금과 같이 즉각적으로 현금화될 수 있는 재산을 포함시켰다. 즉, 그들은 소득액에 주택 등의 필수재산을 제외한 재산액을 합산

한 위기척도(Crisis measure)를 적용하여 빈곤율을 계산하였다. 구체적으로 David and Fitzgerald(1987)은 SIPP 1984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이전 인터뷰에서 보고된 이자(interest)에 이자율 6%를 적용하여 자본화된 가치(capitalized value)를 추정하고 이를 소득에 더하여 위기척도에 따른 빈곤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월별 단위(monthly basis)로 빈곤율을 측정하였을 때 소득에만 기반한 공식적 빈곤선을 이용한 경우보다 위기척도에 따른 경우 빈곤율이 3%포인트(21%) 감소되고, 4개월 단위의 경우 2%포인트(14%), 그리고 연도 단위의 경우 1%포인트(8%) 감소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채권이나 임대재산의 자본화된 가치를 더하는 것은 빈곤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미국의 경우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가구들이 이러한 재산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2. 연금화의 방법(annuitization)

Weisbrod and Hansen(1968)은 재산이 수학적으로 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순재산(net worth)을 일정기간동안의 연금으로 전환하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어떤 개인이나 가구의 특정 연도에 있어서의 경제적 지위, Y^* , 는 그 기간의 연간 소득과 그 현재 순재산의 연간생애연금가치(annual lifetime annuity value)의 합으로 구성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식(1)과 같다.

$$Y_t^* = Y_t + NW_t A_n = Y_t + NW_t \frac{r}{1 - (1+r)^{-n}} \quad (1)$$

수식(1)에서 Y_t^* 는 t 시점에서의 경제적 지위(economic position), Y_t 는 현재의 연간소득, NW_t 는 t시점에서의 재산(net worth), A_n 은 현재가치가 1인 n 연도동안의 연금, 그리고 r 은 이자율이다.

이 기본모델을 이용하여 순재산이 연금화되는 두 극단적인 기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순재산이 무한의 기간동안 연금화된다면, 그 개인 또는 가구의 경제적 지위는 현재의 연간소득에 의해서만 결정되게 된다. 즉

$$Y_t^* = Y_t \quad (2)$$

다음으로 순재산이 현재년도 동안에만 전적으로 연금화된다면 현재의 경제적 지위는 현재의 연간소득과 현재의 순재산액의 합으로 구성된다.

$$Y_t^* = Y_t + NW_t \quad (3)$$

Weisbrod and Hansen(1968)은 저축이 일반적인 생애기간동안의 소비패턴을 스무드하게 만들고 의료지출과 같은 예기치 않은 욕구에 대비하기 위해 이루어진다는 생애주기가설에 근거하여 순재산이 연금화되는 기간을 성별 연령별 기대수명으로 설정하였다.

Weisbrod and Hansen(1968)의 이러한 순재산의 연금화의 방법은 저량인 재산을 유량인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는 한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후 Moon(1977)은 노인들의 경제적 복지(economic well-being)을 측정하는데 이 방법을 이용했다. 그러나 이 순재산의 연금화의 방법에 있어서 핵심은 연금화기간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Weisbrod and Hansen(1968)에 의해 사용된 기대수명까지의 잔여기간동안의 순재산의 연금화는 노인과 젊은이의 경제적 지위에 상당히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고 잔여기대여명이 짧으므로 재산의 연금화에 따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이 큰 반면, 젊은이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고 잔여기대수명은 길므로 재산의 연금화에 따른 경제적 지위변화의 정도가 작다. 그래서 잔여기대수명기간 동안의 순재산의 연금화방법을 적용할 경우 노인들의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고 젊은이들의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다. 이 방법을 공적부조제도에 적용할 경우 노인들의 공적부조 탈락율이 높아져 젊은이에 비해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다.

3. 추정임대료 (Imputed rent)

임차인(renters)과 주택소유자(homeowners)의 경제적 자원의 정도를 비교함에서 있어서 소득만을 측정하게 되면 주택소유자의 경제적 자원을 상대적으로 저평가하게 되므로 주택소유자들이 집으로부터 얻는 서비스의 유량(flow of services)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주택소유자들이 집으로부터 얻는 서비스의 유량의 평가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대한 임대료 비용을 추정하여 이를 소득에 포함하고자 하는 일련의 시도들이 있어 왔다. 그 기본논리는 주택소유자들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자에 비해 그 임대료만큼 다른 항목의 소비를 위한 소득을 더 가지므로 주택소유자들의 소득에 추정임대료(imputed rent)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득에 추정임대료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주택소유자들의 실질 지출능력이 과소평가된다는 것이다.

주택소유자들의 추정임대료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 계산되어왔다. 첫째, 주택소유자들에게 그들의 주택을 임대할 경우 어느 정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지를 질문하

는 것이다. 둘째, 주택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주택의 특성(방수 등)에 따른 임대료의 정도를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방법은 임대료의 추정에 있어서 일정한 문제를 가진다. 전자의 방법은 응답오류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후자의 방법은 임대자와 주택소유자 모두의 주택의 특성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또한 회귀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

한편 Ruggles(1990)는 많은 노인들이 그들의 현재 욕구보다는 더 큰 주택에 계속 거주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택의 특성 자체로부터 추정된 임대료를 그대로 소득에 추가하는 것은 이들의 경제적 자원의 정도를 과대평가하는 문제를 가진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추정임대료에 대한 일정한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4. 정리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의 재산의 소득환산 방법들은 모두 개인 또는 가구의 경제적 자원을 평가할 때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기반한다. 그러나 각각의 방법들은 나름대로의 재산의 소득환산을 시도하지만 각각 그에 따른 이론적 현실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합의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한 결과 재산의 소득환산에 대한 논리를 두 가지 모델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모델1 : 재산의 매각 후 사용 모델

첫 번째의 모델은 빈곤선의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경우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재산을 매각하여 소득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Weisbrod and Hansen(1968)의 연금화 방법이나 David and Fitzgerald(1987)의 위기척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의 논의와 관련하여 재산의 매각 후 사용을 전제할 경우, 두 가지의 주요 이슈가 제기된다.

첫째, 어떤 재산을 매각해야 하는가의 이슈이다. David and Fitzgerald(1987)는 그들의 위기척도에서 어떤 개인이나 가구가 위기상황에 있는지(또는 공공부조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 등의 필수적인 재산을 제외하고 즉각적으로 현금화될 수 있는 재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들의 분석에서는 필수재산의 여부와 즉각적 현금화의 정도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다. 양자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다. 필수재산을 재산 매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산이라면 이를 매각하여 생활비에 충당

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인간에게 있어서 주거는 기본적인 것이므로 자신의 집을 매각하여 생활비를 충당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즉각적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을 재산 매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실제로 현금화가 어렵는데 이를 가능한 것처럼 전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다.

둘째, 매각한 재산을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에 균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해야 하는가의 이슈이다. Weisbrod and Hansen(1968)는 재산을 매각하여 잔여기대수명동안 연금화하여 균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방법은 젊은이에 비해 노인들의 소득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공공부조에서는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그러나 그들의 기본모델은 사용기간에 다양한 변화를 허용하기에 충분히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공공부조 제도들에서 이용되는 단순재산기준(simple cutoff)은 이들의 모델에서 사용기간을 현재년도(또는 월)로 제한한 경우 - 즉 식(3) - 에 해당된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재산이 빈곤선의 소득액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재산은 빈곤선의 소득액보다 훨씬 크므로, 재산을 매각하여 즉각적으로 당해(또는 당월)에 사용한다는 것과 동일하다.²⁾ 재산을 매각후 잔여기대수명 동안 균분사용한다는 연금화(annuitization)의 논리와 재산을 즉각적으로 사용한다는 단순재산기준(simple cutoff)의 논리는 매각한 재산의 사용기간 설정에 있어서 양극단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론적 모델들은 이러한 양극단의 사이에 어느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을 매각하여 이를 생활비로 사용한다는 모델에 기반할 경우, 재산의 성격(필수재산, 즉각적 현금화 가능성)에 따른 매각 대상 재산의 설정과 매각된 재산의 사용기간의 설정을 둘러싼 정책적 판단의 문제가 제기된다.

2) 모델2 : 재산으로부터 파생되는 서비스의 소득으로의 환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두 번째의 모델은 재산으로부터 파생되는 서비스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평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추정임대료모델은 서비스를 창출하는 재산의 한 종류로서 주택의 경우 임차인에 비해 자가소유자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의 소득액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재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서비스를 소득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재산이 어떠한 서비스를 창출하는지 그 서비스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는데 관련된 기술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2)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약 100만원 정도인 반면, 재산 중 동산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동산만을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모델1과 모델2간에는 일정한 갈등관계가 존재한다. 모델1은 재산을 매각하므로 재산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전제한다. 반면, 모델2는 재산이 매각되지 않는 것을 전제한다. 재산이 매각된다면 재산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재산으로부터 파생되는 서비스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모델 간에는 일정한 갈등관계가 존재한다.

〈표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재산(2006)

항 목	비 고
1.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제180조제2호) 및 토지(제234조의8)	- 단, 중증재산, 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2.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3.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항공기(제180조제4호 및 제5호)	
4.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5.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 가. 승용자동차 중에서 ○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³⁾ ○ 1500cc 미만의 차량 중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확한 차량 제외) -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나. 승합자동차 중에서 생업용 차량 및 장애인사용 2000cc 미만 차량 다. 이륜자동차 중에서 50cc 이상 260cc 미만 차량 라.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포함)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다만, 대형 화물자동차로서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마.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바.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사.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써,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 장애인사용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로서, 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인정됨 - 교통법칙금·자동차세 등의 미납에 따라 압류된 경우에 적용되지 않음

□ 금융재산

-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 공제재산
 - 생활준비금공제: 금융재산의 경우 의료비, 관혼상제비,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300만원은 금융재산에서 제외⁴⁾
 -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1통장에 한해 연간 300만원 한도(3년 600만원)에서 공제(수급권자에 한하여 적용)

4) 생활준비금은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자소득 산정 시에는 생활준비금을 포함한 전체 금융재산에 대해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산정

〈표 2-2〉 금융재산의 공제대상 및 공제기준(2006)

공제대상 및 수준	비 고
(가) 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300만원 공제	-부양의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이자는 소득으로 산정
(나)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1통장에 한해 연간 300만원까지(3년 600만원)	-부양의무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이자를 적립하는 경우만 해당됨. -이자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만기시 재산으로 산정

□ 승용차

-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 “승용차”에 해당하는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표 2-3〉 자동차의 재산종류 구분(2006)

일 반 재 산	승 용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 1500cc 미만의 다음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확한 차량 제외) ·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 승합자동차 중 생업용 차량, 장애인사용 2000cc미만 차량 ○ 이륜자동차 중 50cc이상 260cc미만 차량 ○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이상 덤프트럭 포함), 콘크리트믹서트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벤형 화물자동차로서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 특수자동차(건인·구난용 등) ○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법칙금·자동차세 등의 미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써,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자동차(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 승합자동차(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 이륜자동차 중 260cc이상 ○ 화물자동차 중 벤형 화물자동차(다만, 생업용 또는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을 제외) ※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일반차량으로 분류 ※ “승용차”에 해당하는 타인명의로의 자동차 상용시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재산 처분이 곤란한 경우, 기타 불가피한 경우 일정정도 이내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보지 않고 제외하고 있음.
- ※ 부양의무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임.

〈표 2-4〉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2006)

제외되는 재산 및 수준	비 고
<p>(1)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단, 재산가액(총재산-부채-공제액)이 6,0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p> <p>○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미만의 자 - 65세 이상의 자(다만, 종전 노령기준에 의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64세인 자도 포함) - 임산부(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 6월미만의 여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촉진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p>-근로능력이 있어도 미취학아동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 간병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가 어려운 경우 1인에 한하여 인정</p>
<p>(2) 재산처분의 곤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다만,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p> <p>(가)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p> <p>(나)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실종,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등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p> <p>(다)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p>	<p>- (1)과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방식을 적용</p>
<p>(3)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로서 보장기관이 소득환산의 대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가구의 재산에 대해서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p>	<p>- (2)~(3)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해당 재산을 제외처리하고 나머지 소득환산 대상 재산에 대하여 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차감</p>

3. 기초공제액(공제대상 기본재산액)

개념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적용금액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

〈표 2-5〉 지역별 기초공제액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3,800	3,100	2,900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 : 도의 “시”

농어촌 : 도의 “군”

- 본재산액 적용상의 예외
 - 부양의무자가구 : 2.5배 값을 적용(21쪽 참조)

□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
-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공제 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증용차가액에 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4. 부채

□ 부채의 종류와 범위

- 의료비부채
- 학비부채
- 주거부채 : 자가 또는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 일반부채 :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 부채 인정시 유의사항

-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을 부채로 인정
 - 개인간의 부채(사채)는 공증인 증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채만 인정하되 이자납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적인(2회 이상) 이자납입 증명 등을 통해 확인하여 인정

- 반드시 부채의 사용처를 입증하게 하여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부분 (주택, 금융재산 등)은 우선 해당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
-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 부채공제 방식

- 공제대상 부채 금액의 결정
 - 부채는 용도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증인 증서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채는 일반재산기준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고재산액⁵⁾까지만 인정(다만, 의료비부채가 최고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부채에 한해서만 전액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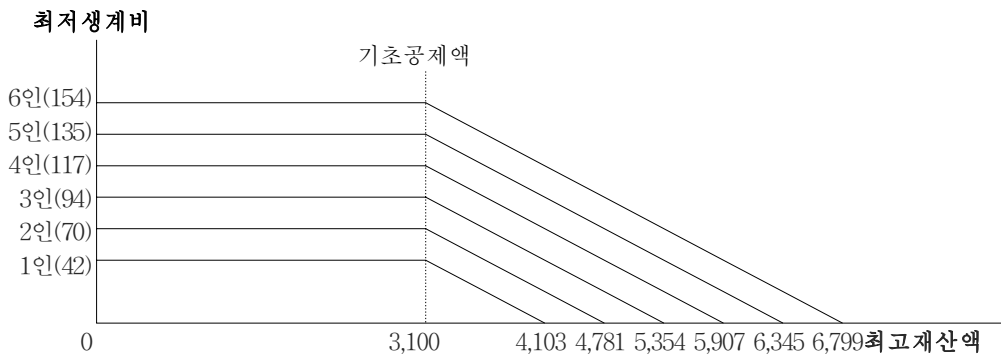
<가구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단위 : 원)

가구 \ 지역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1 인	39,031,391	41,031,391	48,031,391
2 인	45,806,930	47,806,930	54,806,930
3 인	51,538,345	53,538,345	60,538,345
4 인	57,067,674	59,067,674	66,067,674
5 인	61,451,847	63,451,847	70,451,847
6 인	65,987,578	67,987,578	74,987,578

<참고 : '06년 중소도시 기준 가구별 일반재산기준 최고재산액 도해>

(단위 : 만원)



5) 최고재산액의 의미 :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재산만 있을 경우 수급자로 선정 보호될 수 있는 최대 재산금액. 기초공제액 설정시 지역차이만 반영하고 가구규모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최저생계비 설정시 가구규모의 차이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고재산액의 범위는 가구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됨.

- 부채차감 순서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해도 남는 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승용차 가액에서는 더 이상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5.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소득환산율 산출방식

- 일반재산

- 지역별 전세가격 등 재산 수준, 신규 수급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일반재산을 2년 동안에 최대한 사용하는 경우의 환산율 적용⁶⁾

- 금융재산

-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재산의 1.5배 수준의 환산율을 적용

- 승용차

- 승용차를 보유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기 곤란하다는 현재의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월 100% 환산율 적용

6) 환산율 설정 원리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와 최저생활보장 원리의 절충을 통해 산출되는 것으로 통상의 이자율(수익율)과 다름(현행 이자율에 기초하여 환산율을 설정하게 되면 역대 이상의 재산 보유자도 수급자로 선정 보호되는 문제 발생)
- 즉,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보호되기 전에 자신의 재산, 소득,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보충성의 원리(법 제3조)에 기초하되,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도 반영하여 보유재산 등에 대한 활용 기간을 적정하게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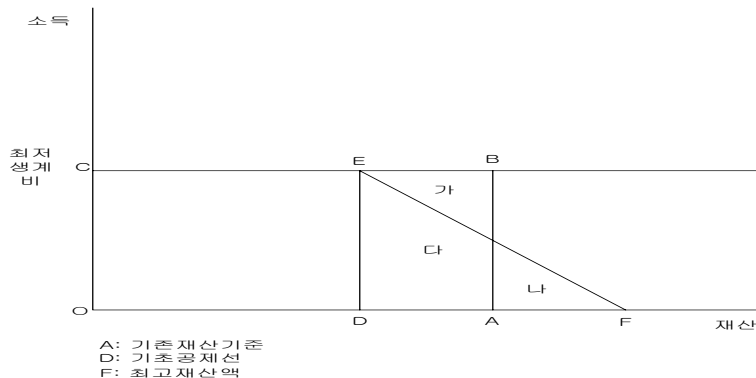
제2절 재산의 소득환산에 대한 쟁점

1. 재산의 소득환산의 타당성: 단순재산기준(simple cutoff), 차등적 재산기준,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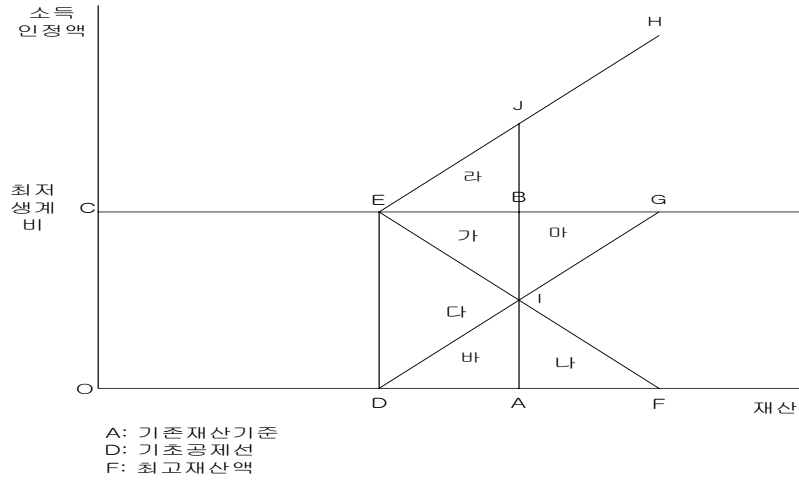
2002년까지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선정에 있어서 소득과 재산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단순재산기준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모델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각하여 생활비에 사용해야 한다는 모델1의 논리에 입각해 있다. 모델 1중에서도 필수재산으로 재산기준까지의 재산액을 설정하여 그 이상의 재산을 즉각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고, 매각된 재산의 사용기간은 당월에 즉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가정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재산기준방식은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동일재산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림 2-1>은 기존의 단순재산기준 적용방식의 수급자 선정상의 형평성 문제를 잘 보여준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기준선 보다 약간 낮은 경우(그림에서 삼각형 '가'로 표시되는 부분)와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기준선을 초과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그림에서 삼각형 '나'로 표시되는 부분)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전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상당수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아주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도입하여 그림에서 '가'에 위치하는 사람들을 탈락시키고 '나'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신규수급자로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주장되었다. 이 그림에 의해 도식화된 수급자 선정상의 형평성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림 2-1> 소득수준별 차등 재산기준과 수급자 선정상의 형평성



<그림 2-2> 재산의 소득환산제 도입과 소득인정액



그러나 사실 <그림 2-1>은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보여준다기 보다는 소득수준별 차등적 재산기준(이하 차등적 재산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선 EF는 연속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소득구간에서 일련의 하위구간들로 나누어 차등적인 재산기준을 적용할 경우 일종의 소득수준에 따른 계단식 함수로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 재산기준으로 설정된다. <그림 2-1>은 재산의 소득환산이라기 보다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 재산기준을 적용하는 일종의 재산기준(cutoff) 방식을 보여준다.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보다 정확하게는 <그림 2-2>에 의해 묘사된다. <그림 2-2>는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의 분포를 보여준다. 기초공제액 수준인 D 점을 넘어선 재산을 가진 경우 그 재산액은 소득액으로 환산된다. DF의 재산을 가진 최저생계비미만 소득자들의 소득분포는 DFGE로부터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의 분포가 DGHE로 증가된다. 그 결과 세가지 경우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영향을 받게 된다. 첫째, 삼각형 '가'(즉, EBI)에 속한 사람들의 소득인정액은 이제 삼각형 '라'(즉, EBJ)로 증가하게 되고 이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게 된다. 그 결과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탈락하게 되고 삼각형 '가'(EBI) 면적 만큼의 급여를 상실하게 된다. 둘째, 삼각형 '나'(즉, AIF)에 속한 사람들의 소득인정액은 이제 삼각형 '마'(즉, BIG)로 증가하게 되지만 최저생계비수준에 미달하여 신규 수급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진입하게 된다. 이들은 삼각형 '마'만큼의 급여를 수급하게 된다. 셋째, 삼각형 '다'와 '바'(즉, DAIE)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소득인정액이 삼각형 '가'와 '다'(즉, DIBE)로 상승하게 된다. 이들의 경우 소득인정액수준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므로 수급자격은 유지하

지만 재산의 소득환산에 따른 소득인정액의 증가액만큼 즉, 삼각형 '바'(즉, DAI)만큼의 급여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적용 결과 기존수급자들의 탈락에 따른 '가' 면적 만큼의 급여지출 감소와 계속수급자들의 급여감소에 따른 '바' 면적 만큼의 급여지출감소 요인이 발생하는 반면, 신규수급자들의 진입에 따른 '마' 면적 만큼의 급여지출증가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소득에 따른 차등적 재산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그림 2-1)와 재산의 소득환산에 따른 소득인정액제도를 적용하는 경우(그림 2-2)를 비교하여 보면 두 방법간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두 경우 모두 탈락자, 신규수급자, 그리고 계속수급자를 동일하게 선정한다. 둘째, 그러나 급여수준의 측면에서 보면, 기준수급자 중 탈락자들은 두 경우 모두에서 급여전부를 제거당하므로 그 영향이 동일한 반면, 신규수급자들과 계속수급자들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신규수급자의 경우 차등적 재산기준에 비해 재산의 소득환산제하에서 급여수준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예를 들어 F점에서 소득이 0이고 최고재산액을 가진 신규수급자의 경우 차등적 재산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급여액이 최저생계비액(OC)에 해당되는 반면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급여액이 0이 된다. 또한 계속수급자의 경우에도 차등적 재산기준에 비해 재산의 소득환산제하에서 급여수준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예를 들어 A점서 소득이 0이고 기존재산기준에 해당되는 재산액을 가진 경우 차등적 재산기준에서는 급여액이 최저생계비액에 해당되는 반면 재산의 소득환산제하에서는 급여액이 BI로 줄어든다. 즉,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 재산기준에 비해,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는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을 가진 수급자들의 급여를 감소시킨다. 셋째, 그 결과 자산의 소득환산제에서는 차등적 재산기준하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형평성 문제가 완화된다. 예를 들어 차등적 재산기준하에서는 동일하게 소득이 없지만 재산이 0과 F로 서로 다른 두사람에 대해 최저생계비만큼의 동일한 급여를 제공한다. 이 경우 두 사람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의 소득환산제하에서는 재산이 0인 사람은 최저생계비만큼의 급여를 그리고 F의 재산을 가진사람은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재산수준의 차이에 따른 급여수준의 차이가 발생되게 된다. 넷째, 정부예산의 측면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제하에서는 차등적 재산기준에 비해 수급자들의 급여가 감소되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제가 비용절감적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단순재산기준으로부터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 재산기준으로의 전환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제로의 전환은 재산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 기반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재산은 효용일 뿐인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재산을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재산을 주택 등과 같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발생시키는 재산, 은행저축 등과 같이 즉각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 그리고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나대지와 같이 서비스를 생산하지도 즉각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하지도 않은 재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서비스를 창출하는 재산의 경우 그 부분만큼 서비스를 구입할 지출수요가 없으므로 그만큼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둘째, 즉각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의 경우 한 개인이나 가구가 빈곤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현금화하여 소득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셋째, 서비스를 생산하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하지도 않은 재산의 경우, 장기적으로 일단 매각되면 일시적으로 목돈(lumpsum money)이 발생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즉각적인 현금화가 어려우므로 소득부족을 대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이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종류의 재산의 현금화에 있어서 제기되는 시간적 갭은 대출에 의하여 스무드(smooth)해질 수 있다.

정리해 보면, 서비스를 창출하는 재산이나 즉각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은 일종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서비스를 생산하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하지도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이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가능성을 전제하면 이 재산은 개인에게 이용 가능한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재산의 소유는 단순히 개인에게 주관적인 효용만을 제공한다기 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자원 특히 현금소득(money income)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재산기준보다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 재산기준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재산의 범위

기본적으로 재산은 총재산에서 총부채를 제한 순재산(Net worth)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순재산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재산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와 총부채의 인정 범위와 관련된 이슈가 제기된다.

가. 총재산의 범위 설정: 매도권과 사용권

총재산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매도권과 사용권을 둘러싼 이슈가 제기된다. 매도권과 사용권이 모두 있는 재산의 경우 이를 총재산의 범위에 포함하고, 매도권과 사용권이 모두 없는 경우 이를 총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예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또한 매도권이 있는데 사용권이 없는 경우는 시설수용자나 행방불명자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거의 관계가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매도권은 없고 사용권만 가진 재산의 경우이다(<표 2-8> 참조).

<표 2-8> 총재산의 범위: 매도권 대 사용권

		사용권	
		Yes	No
매도권	Yes	포함	해당사항 없음
	No		제외

매도권은 없으나 사용권은 있는 경우 이를 총재산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경우 이 재산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생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취급되어야 한다. 이 재산이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를 발생시킨다면 이 가구는 이 서비스의 구입비 만큼의 소득이 필요 없게 된다. 즉, 그 만큼의 계산되지 않는 소득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를 창출하는 재산은 소득환산의 대상 재산의 범위에 포함시켜 서비스 생산분 만큼의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반면, 이 재산이 서비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이 가구는 이 재산을 처분할 수도 없고 어떤 서비스도 받을 수 없으므로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매도권이 없으나 사용권이 있는 경우에 대해 일관적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편에서는 가구원이 아닌 사람(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 행방불명, 실종 등)의 명의의 재산을 해당 가구원이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하고 있다. 그 바탕에는 이 재산들이 서비스를 생산하는 재산이라는 가정이 깔려있다. 그래서 매도권은 없지만 해당 가구원들이 그 재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으므로 이를 재산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이 서비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재산이라면 재산의 처분을 통해 생활할 수 없으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에 의한 소득인정액은 과대평가된다는 문제가 발생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매도권이 없거나 매도권을 있더라도 이를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압류나 경매 상태에 있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 행방불명 실종, 소년소녀가장 등 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소득환산 대상 재산범

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해당 재산이 서비스를 창출한다면 그 창출된 서비스만큼의 계산되지 않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나. 부채의 범위

순재산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채를 어느수준까지 어떻게 인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부채의 인정수준과 관련하여 부채를 무제한 인정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재산이 100억이고 부채가 100억인 가구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이 되게 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부채의 인정수준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느 선에서 부채의 인정수준을 제한할 것인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남는다.

3. 재산의 종류구분

재산의 소득환산에 있어서 재산을 전체로 묶어서 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 다른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재산의 소득환산 목적과 관련하여 재산이 동질적 성격을 가진다면 묶어서 동일한 재산환산을 그리고 재산이 이질적이라면 재산을 구분하여 차등적 재산환산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재산의 소득환산 목적과 관련하여 재산을 서비스를 창출하는 재산 여부, 필수재산 여부, 그리고 즉각적 현금화의 여부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다. 서비스를 창출하는 재산인 경우 창출된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반면, 서비스를 창출하지 않는 재산의 경우 재산을 처분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균분사용분을 계산하여야 한다. 비필수재산의 경우 이를 매각하여 생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필수재산의 경우 이를 요구하기는 어렵다. 즉각적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 이 재산을 현시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즉각적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의 경우 이를 매각하여 즉각적으로 지출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의 환산제 도입 이전에 단순재산기준방식을 적용하면서 재산을 종류별 구분 없이 묶어서 동질적인 것으로 취급했었다. 그러나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도입하면서 재산을 일반재산,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환산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주로 서비스를 창출하는 재산 여부의 기준보다는 필수재산여부와 즉각적 현금화의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

되고 있는 듯하다. 이 두 가지 기준과 관련하여 일반재산,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를 분류해 보면 다음 <표 2-9>와 같다. 우선 승용차를 대표적인 비필수재산으로 규정하여 이를 다른 재산과 별도로 구분하고, 다음으로 나머지 재산들을 즉각적 현금화 여부에 따라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표 2-9> 재산의 분류

		즉각적 현금화	
		Yes	No
필수재산	Yes	필수적 금융재산	필수적 일반재산
	No	비필수적 금융재산 자동차	비필수적 일반재산

한편, 이와 같이 재산의 종류를 구분하여 소득환산에 있어서 차이를 두는 경우 유의해야 할 점 중의 하나는 이들 재산 종류들이 영원히 구분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의 재산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금융재산의 경우 새로운 비금융재산의 구매를 통하여 비금융재산으로 전화될 수 있고, 일반재산도 금융재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

4. 이중계산의 문제

재산의 소득환산에 있어 재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이나 서비스만을 소득으로 파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득이나 서비스와 함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동시에 파악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쟁점이 존재한다. 이중계산의 문제와 관련하여 재산을 소득이 창출되는 재산, 서비스가 창출되는 재산, 그리고 소득이나 서비스가 창출되지 않는 재산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해 보자. 소득이 창출되는 재산으로는 임차해준 주택, 농지, 은행예금 등이 있고, 서비스가 창출되는 재산으로는 자가 주택이 해당된다. 그리고 소득과 서비스가 창출되지 않는 재산으로는 나대지 등이 있다.

현행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재산에서 창출되는 소득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려 없이 재산 자체를 처분하여 일정기간동안 균분사용한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현행제도 하에서 서비스가 창출되는 재산의 경우 창출된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소득환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산자체만이 소득으로 환산된다. 소득이나 서비스가 창출되지 않는 재산의 경우에도 재산자체만이 소득으로 환산된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들의 경우에는 이중계산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을 창출하는 재산의 경우 재

산으로부터 창출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양자 모두를 소득인정액에 포함하는 이중계산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중계산의 문제는 달리 말하면, 재산에서 소득 창출된다고 하면서 동시에 재산을 처분하여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적 모순을 야기한다. 이 문제는 재산의 처분 전 창출된 소득이 재산의 처분후 균분사용기간 동안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된다면 이중계산의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어떤 수급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연초에 조사된 후 재조사 없이 연말이나 다음해까지 계속 적용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

하지만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의 균분사용에 의해 원래의 재산이 점감해가고 이에 따라 재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소득도 점감해 가는 것으로 계산된다면 이중계산의 문제가 해소된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의 경우 재산의 균분사용에 의해 재산이 감소된 만큼 이자소득도 감소되고 이것이 매월 소득조사에 의해 반영된다면 이중계산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기초공제

가. 기초공제의 타당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함에 있어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중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생활에 필수적인 재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의 이슈가 제기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금융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300만원을 기초공제하고 장기금융저축의 경우 3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공제한다. 그 후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묶어 통합적 기초공제로 최저주거면적의 지역별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2004년 현재 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 기초공제하고 있다. 이 때 통합적 기초공제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공제 도입의 타당성은 재산의 소득환산에 있어서 무엇을 환산하려고 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만일 재산의 소득환산의 목적이 서비스를 창출하는 재산의 경우 그 창출되는 서비스를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초점이 두어진다면 기초공제가 없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에서 일반재산의 경우 최저주거면적의 전세가격에 해당되는 만큼의 재산을 소득환산에서 제외한다고 할 때, 자가소유자는 임차인에 비해 임대료만큼의 소득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 된다. 즉 자가소유자는 공공부조가 필요 없는데도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실제로 지출되지 않는 임대료부분만큼의 과잉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재산의 소득환산의 목적이 재산으로부터 창출된 서비스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최저생계비 개념과

의 일관성을 높이려는데 있다면 기초공제의 도입은 과잉수급자 선정이나 과잉급여의 문제를 야기한다.

한편, 재산의 소득환산의 목적이 기본생활에 필수적인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처분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여야 한다는 개념에 기반한다면 기초공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된다. 이 경우 재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이나 서비스는 재산의 처분을 전제하면 이중계산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고려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즉 재산처분 후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을 전제할 경우 인간으로서의 기본생활의 유지나 미래 위험에 대비한 최소한의 준비로서 일정한 재산을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공제액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재산의 소득환산의 목적을 수급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생활해야 한다는 개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기초공제가 없을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재산액이 0인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가 탈락하거나 급여감소를 경험하게 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재산종류별 기초공제

기초공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 기초공제를 재산의 종류에 무관하게 전체 재산을 묶어서 설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산종류별로 별도의 기초공제를 설정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재산의 종류를 구분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의 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기초공제의 수준도 재산의 성격에 따라 종류별로 차등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재산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기초공제는 통합하여 할 경우, 필연적으로 재산의 종류 간 기초공제의 적용순서의 문제가 제기된다. 기초공제의 적용순서에 따라 개인들의 재산구성에 따라 기초공제 적용상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별도의 기초공제 300만원을 적용하고, 그 후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묶어서 기초공제액을 설정하고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순으로 기초공제액을 적용하고 있다. 재산종류별 별도의 기초공제와 통합적 기초공제의 절충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초공제 적용방식의 결과 금융재산의 비중이 높은 가구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기초공제 적용방식은 과거의 재산의 종류 구분이 없던 상황에서 재산의 종류별 기초공제를 실시할 경우 금융재산 비중이 높은 가구의 수급탈락이 과도하게 발생할 것을 우려한 일종의 정책적 판단을 고려한 것이다.

다. 지역별 가구규모별 기초공제 수준

현행 제도에서 기초공제의 수준은 지역별 최저주거면적의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기초공제의 수준은 최저생계비 산정에 있어서 주거비를 지역별 최저주거면적의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과 일관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또한 노인이나 장애인 가구가 최저주거면적의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 주택을 팔아서 전셋집으로 옮겨야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이나 장애인 가구 등의 근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가구들에 대해서 기초공제의 수준을 최저주거면적의 전세가격으로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중 순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에 해당되고 승용차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순재산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 경우와 동일한 재산의 소득환산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근로무능력가구의 경우 그 기초공제수준을 차등적으로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근로무능력가구의 경우에는 최저주거면적의 전세가격이 아니라 최저주거면적의 주택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초공제수준의 기준이 되는 최저주거면적의 전세가격은 지역별, 가구규모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역별 차이만을 고려하고 가구규모별 구분 없이 전가구에 대해 4인가구의 최저주거면적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초공제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1-3인 가구의 경우에는 과대적용되고 5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과소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제 도입시 가구규모별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져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또한 수급자 선정시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이미 가구규모별로 차등화되어 있어 가구규모별 차이가 일정정도는 반영된다는 점도 감안되었다. 현시점에서는 기초공제에 가구규모별 차이를 둘 경우 현재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어 있는 1-3인 가구의 기초공제액이 감소되어 이들의 탈락이나 급여감소가 발생된다는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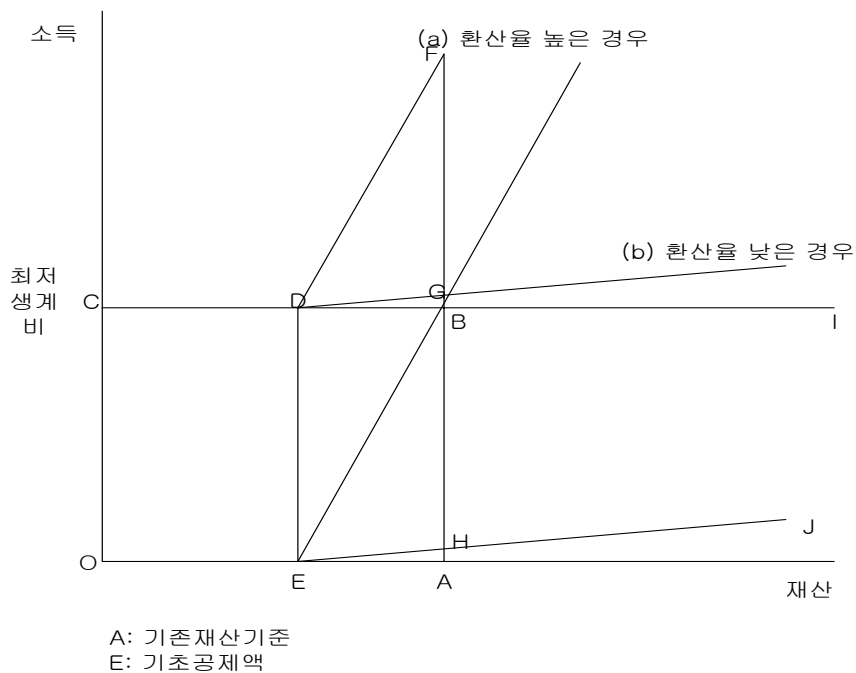
6. 환산율

환산율은 재산의 분할사용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Weisbrod and Hansen(1968)의 경우 재산을 기대수명까지의 남은 기간동안 균등분할 사용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David and Fitzgerald(1987)는 주택 등의 재산을 제외하고 즉각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만을 대상으로 이를 1개월, 4개월, 1년 동안 사용

하는 경우들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에서는 재산의 종류별로 일반재산은 24개월 동안 균등분할하여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4.17%의 환산율(=1/24)을 설정하고, 금융재산은 16개월 동안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6.26%의 환산율(=1/16)을 설정하였고, 자동차는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즉각적으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가정하에 100%의 환산율을 설정하고 있다.

환산율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이론적 근거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현행 제도의 환산율은 탈락자와 신규수급자의 규모간에 일정한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환산율을 아주 높게 설정하면 신규수급자 없이 탈락자가 다수 발생하고 급여감소폭도 커진다(<그림 2-3> (a) 경우). 반대로 환산율을 아주 낮게 설정하면 탈락자가 작고 급여감소도 작다(<그림 2-3>의 (b) 경우). 현행 제도의 환산율은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들을 피하고 탈락자와 신규수급자의 규모간에 균형을 맞추어 제도의 연착륙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3> 환산율의 고저와 소득인정액 변화



재산의 종류간에 환산율에 차등을 둔 것은 즉각적 현금화의 가능성에서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필수재산으로서의 성격, 재산종류간의 전환가능성, 그리고 소득이나 서비스 창출재산 여부 등의 측면들을 고려하면 재산의 종류간에 환산율에 차등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이 제기될 수 있다. 기초공제후의 일반재산과 금융재

산은 양자 모두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생활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그 구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서로 전환될 수 있다. 그리고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그 이자수입을 소득으로 산정하고 또한 금융재산 자체에 높은 환산율을 적용하면서, 자가주택의 경우에는 절약되는 임대료 부분을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고 또한 주택 자체에 대한 환산율도 낮게 설정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IV. 기초노령연금의 재산의 소득환산 기본방향

□ 기초노령연금의 목적과 국민정서간의 조화

- 기초노령연금은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완화 및 노인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적은 모형이 바람직함.
- 반면, 기초노령연금의 성격을 연금으로 규정할지라도 무기여, 자산조사, 선별성 등의 공공부조적 성격도 있으므로 국민정서를 감안하여야 함. 국민정서를 감안할 경우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환산액이 산출되는 모형이 바람직함.
- 제도 도입초기 제도의 연착륙이라는 관점에서는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환산액이 산출되는 모형을 적용하고, 중기는 양자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장기에는 기초노령연금의 목적에 무게 중심을 두는 방안이 바람직함.

□ 재산의 소득환산제 모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구성되어 있음.
 - 동 모형 중 기초공제액은 이론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나, 제도 도입 초기의 연착륙이라는 측면에서 도입되었음. 즉, 기초공제액을 두지 않을 경우 거의 대부분의 수급자가 탈락하거나, 급여가 삭감됨.
- 기초연금제의 경우 처음 제도화되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됨. 따라서 기초공제액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재산종류에 따른 차등 소득환산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재산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음.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구분한 것은 필수재산 여부, 유동성 차이를 감안하고자 한 것임.

7) 공공부조제도는 최저생계비와 개별가구의 능력을 비교하여 빈곤여부를 판정하고 차액을 급여하는 제도임. 여기서 최저생계비에는 재산이 없을 경우에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므로 개별가구의 능력을 추정할 경우에 동일 차원의 논리가 적용되어야 함.

- 금융재산의 경우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재산보다 환산율을 높게 설정하였으나, 금융재산의 경우 이중적용의 문제⁸⁾가 있음. 원론적인 관점에서는 소득이 창출되는 재산은 소득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금융재산에 대한 유동성을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금융재산을 일반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일반재산에는 주거용 주택, 비주거용 주택 및 건물, 임야, 논밭, 나대지 등의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음.
- 이들 일반재산에는 필수재산과 비필수 재산이 혼재되어 있고, 이익이 창출되는 재산과 창출되지 않는 재산이 섞여 있음.

〈표〉 일반재산 구분

구분	필수재산	비필수 재산
이익이 창출되는 재산	농사용 토지	임야, 비주거용 주택 및 건물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재산	주거용 주택	나대지

- 이중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주거용 주택은 필수재산이므로 다른 일반재산보다 낮은 환산율이 적용되어야 함.
- 또한 이익이 창출되는 농사용 토지는 농업소득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원론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며,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고,⁹⁾ 한미 FTA 등의 대외개방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 Infra를 감안한 제도의 세분화

- 어떤 제도의 설계나 마찬가지로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있어서도 실현가능성(feasibility)을 고려하여야 함.
- 제도 시행 초기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면, 실현가능성(feasibility)을 떨어뜨림.

8) 동일 재산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할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이자가 동시에 적용됨
 9) 나대지는 재산환산만 적용되나, 농사를 지을 경우 농업소득과 환산이 동시에 적용됨.

V. 기초노령연금의 재산의 소득환산 방안(안)

1. 재산의 소득환산제 모형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부채) ×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 ※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2. 재산의 종류 및 범위

□ 재산의 범위 및 구분

- 범위: 본인 또는 부부 명의의 재산
- 구분: 비 주거용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주거용 주택, 승용차
- 비 주거용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을 준용하되 다음 재산들은 제외
 - 농사용 전답은 재산(소득으로만 파악), 종중 재산, 장애인의 활동보조기구,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는 재산에서 제외
- 주거용 주택
 - 노인 명의의 주거용 주택
- 승용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준용

□ 재산가액

- 현시가. 환산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3. 부채

□ 부채의 종류와 범위

- 범위: 본인 또는 부부 명의의 부채
- 종류: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일반부채

□ 부채 인정시 유의사항

-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을 부채로 인정
 - 개인간의 부채(사채)는 공증인 증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채만 인정하되 이자납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적인(2회 이상) 이자납입 증명 등을 통해 확인하여 인정
- 반드시 부채의 사용처를 입증하게 하여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부분 (주택, 금융재산 등)은 우선 해당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

□ 부채공제 방식

- 공제대상 부채 금액의 결정
 - 부채는 용도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증인 증서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채는 일반재산기준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고재산액¹⁰⁾까지만 인정(다만, 의료비부채가 최고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부채에 한해서만 전액 인정)

<가구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단위 : 원)

가구 \ 지역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1 인	39,031,391	41,031,391	48,031,391
2 인	45,806,930	47,806,930	54,806,930
3 인	51,538,345	53,538,345	60,538,345
4 인	57,067,674	59,067,674	66,067,674
5 인	61,451,847	63,451,847	70,451,847
6 인	65,987,578	67,987,578	74,987,578

- 부채차감 순서

- 주거용 주택, 비주거용 일반·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 그래도 부채가 남는 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승용차 가액에서는 더 이상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10) 최고재산액의 의의 :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재산만 있을 경우 수급자로 선정 보호될 수 있는 최대 재산금액. 기초공제액 설정시 지역차이만 반영하고 가구규모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최저생계비 설정시 가구규모의 차이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고재산액의 범위는 가구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됨.

4.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가. 소득환산율 산출방식

□ 비 주거용 일반·금융재산

- 비 주거용 일반·금융재산에 대한 환산율은 다음과 같은 논리 중 하나를 정책적으로 선택하되,
 - 첫째,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개념 적용
 - 재산을 은행에 저금하였다고 가정하여 정기예금 금리 5% 적용
 - 둘째, 연금화의 방법(annuitization)
 - 기대여명 동안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환산율 결정. 기대여명의 경우 나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65세 기준으로 산출
 - 현 65세 노인의 기대여명이 15년이라면, 약 연 6.667(=100/15)%의 환산율이 도출됨.
 - 셋째, 소득과 재산의 보유실태에서 환산율 추정(등가 환산율)
 - 현실에서는 소득만 있는 가구, 소득과 재산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가구, 재산만 있는 가구가 존재. 여기서 소득만 있는 가구와 재산만 있는 가구의 등가성을 바탕으로 환산율을 결정
 -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소득과 재산을 회귀분석한 후 소득에 상응하는 재산액을 추정
 - 소득만 있는 노인이 선정되는 소득기준(하위 60% 해당 노인의 소득을 Y라고 가정)을 추정식에 넣어 재산액을 산출(X이라고 가정)
 - 연간 환산율(r)은 다음과 같이 추정: $X * r \div 12 = Y \rightarrow r = Y * 12 \div X$, 예컨대, 예컨대, X가 20만원이고, 노인가구들의 평균재산이 4,000만원인 경우 r은 6%
- 주거용 주택
 - 주거용 재산은 필수재산이고,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재산이라는 관점에서 비 주거용 일반·금융재산보다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너무 낮은 환산율을 적용할 경우 국민정서에 반할 수 있음.

- 결국 이론과 국민정서간의 선택 문제로 귀착됨.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주거용 일반·금융재산의 1/2정도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승용차

- 승용차에 대한 환산율도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함. 하지만 현행 국민기초보장제도의 환산율 월 100% 환산율은 과도함.
-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승용차 보유실태를 반영하여 환산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예컨대, 승용차 가구당 보유비율이 거의 100%인 미국의 경우 승용차를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음. 이는 필수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으로 고려하지 않는 논리임. 이를 환산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환산율이 0이라는 것과 동일함.
-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가구당 승용차 보유비율은 약 50%임. 그러므로 아직 필수품이라고 볼 수 없음. 또한 국민정서를 감안하여야 하므로 잠정적으로 월 50%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향후 2010년 센서스 자료가 밝혀지면, 보유율 1% 상승에 환산율 1%감액 조정

□ 소득환산율(안)

재산의 종류	비거주용 일반·금융재산	주거용 주택	승용차
소득환산율	약 연 5%(A) 이상	A값의 1/2	월 50%